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2017. 3. 31

관계기관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
Ⅱ. 취약계층 대상별 현황분석 2
Ⅲ.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 7
1.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신설 (공통) 8
2. 교육비·주거비 지원 강화 (공통) ······ 9
3.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 사항 10
4. "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 도입 (공통) 12
IV. 향후계획 13
111.01/11.4

I. 추진배경

- □ 그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신용도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 예)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미소금융),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햇살론 등)
 -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이 유일
- **지원대상 범위 내에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대상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짐
 - *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는 '16년말 기준 총 439만명
- ☆ 취약계층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활·자립에 필요한 분야를 중점 지원할 필요
- □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금수요는 높은 반면, 금융 접근성이 낮고 정보도 부족하여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큼
 - * '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 신고건수 중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 ('15년 1,220건 → '16년 2,306건)했으며,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발생, 계획에 따른 상환 등 신용관리 교육 및 안내 필요
- □ 자립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수급에서 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과 신용교육 등 병행

Ⅲ. 취약계층 현황분석

- ◈ 보다 정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각 지원대상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분석 실시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취약가구로 분류하는 ①한부모가족 ②조손가족 ③다문화가족 ④북한이탈가족(주민) 대상 분석
- ① 현황분석 : 통계청 및 각 부처 국가인증 통계자료* 분석
-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0 조손가구실태조사,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등
- ② 애로사항: 지원대상자 심충면접,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별 금융관련 애로사항 수집
- ➡ 지원대상별 자립·자활에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마련

1 한부모가족

- 연평균 가구소득은 일반가구 대비 약 62.5%로 낮은 편이나, 고용률(87.4%)이 매우 높고, 자립 의지가 강한 편
- ◈ 생계자금, 양육 및 교육관련 비용 지원 희망

가. 현 황

- □ (구성) '15년 한부모가족은 전국 206만 가구*(母子 152만, 父子 54만)로전체 가구(1,911만 가구)의 약 10.8% 차지
 -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전국 약 56만 가구(2.9%)
- □ (소득) '16년 한부모가족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054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4,883만원) 대비 약 62.5% 수준
- 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41.5**%는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13.5%, 저소득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 28%)

□ (고용) 한부모의 87.4%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3%)보다 높으며, 취업 한부모의 5.5%는 부업 중

나. 애로사항

- □ 全연령대에 걸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 비용 부담'인 것으로 응답
-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교육비 이외의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

2 조손(祖孫)가족

- ▶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의 약 44.5%로 매우 낮으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40%는 조부모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수행
- ◈ 양육·교육비 부담, 조부모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

가. 현 황

- □ (구성) '15년 조손가정*은 전국 11만 가구(조부모+손자 4만, 조부 또는 조모 + 손자 7만)로 전체 가구(1,911만 가구)의 약 0.6% 차지
- 조부모 평균연령 만 72.6세(조부 만 73.1세, 조모 만 75세), 손자녀 평균 연령은 13.3세이며, 가구당 양육자녀 수는 평균 1.4명
- □ (소득) '16년 조손가정 연평균 가구소득은 2,175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4,883만원) 대비 약 44.5% 수준
-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31.3% / 전체가구 평균 65.6%)이 낮고, 공·사적 이전소득의 비중(51.0% / 전체가구 평균 7.0%)이 높음
- □ (고용) 조부모가 자체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는 약 39.1% 이며,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46.7%
 - * 생계책임자의 직업은 단순노무직(20.2%), 기타(39.6%), 농·임·어업(17.4%) 등

나. 애로사항

- □ 손자녀의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응답했으며, **공교육 이외의 교육비 지원**을 희망
- □ 약 70% 이상의 **조부모가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긴급 의료비 발생, 생계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우려
 - * 6개월 이상 만성질환 40.8%, 잦은 질병 33.1% 등 70% 이상이 건강문제

3 다문화가족

- ◈ 취약계층 중 가구소득이 가장 양호하며, 고용률도 높은 편
- ◈ 금융지원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희망

가. 현 황

- □ (구성) '15년 다문화가구*는 29.9만 가구로 전체 가구(1,911만 가구)의약 1.6% 차지
 -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 □ (소득) '16년 다문화가정 연평균 가구소득은 4,328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88.6% 수준
- □ (고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3.9%(女 59.5%, 男 83.4%)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60.3% / 女 49.9%, 男 71.1%)보다 높음

나. 애로사항

- □ 금융거래시 **언어문제** 등으로 상담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서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
- □ 취업교육·컨설팅 등도 집단교육 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희망

4 북한이탈주민

- ◈ 소득 및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개선 추세
- ◈ 사회적응을 돕는 특화된 교육 및 생계자금 지원 등 희망

가. 현 황

- □ (구성) '16년말까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0,212명(누계)
- □ (소득) '16년 북한이탈주민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9만원 으로 일반국민(236.8만원)의 68.8% 수준이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
- □ (고용) '16년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고용률은 55.0%로 전체 국민 고용률(60.3%)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
 - * 북한이탈주민 평균 고용률(%): ('12) 50.0 ('13) 51.4 ('14) 53.1 ('15) 54.6 ('16) 55.0

나. 애로사항

- □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남한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 □ 취업교육·컨설팅 등도 집단교육 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희망

< 취약계층 특성 비교분석 >

구분	전체가구/국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구성	1,911만 가구 (100%)	56만 가구 (2.9%)	11만 가구 (0.6%)	30만 가구 (1.6%)	3만명 (0.06%)	
연소득	4,883만원 (100%)	3,054만원 (62.5%)	2,175만원 (44.5%)	4,328만원 (88.6%)	^{월 임금} 162.9만원	
고용률	60.3%	87.4%	39.1%	63.9%	55.5%	
애로 사항	-	양육교육비 생계자금	양육교육비 생계자금 건강문제	양육교육비 생계자금 언어문제	생계자금 적응문제	

Ⅲ.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기본 방향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신설 확대 청소년 한부모 금융피해지원 실손의료보험 자산형성 지원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대상 확대 주거비 - 교육비 지원 확대

① (공통) 기존 "장애인 자립자금"→"취약계층 자립자금"으로 확대

○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긴급 자금수요**로 고금리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低利 생계자금 지원**

② (공통)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

③ (대상별)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 실시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지원, **조부모**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실손보험 지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금융피해지원 강화 등

④ (공통)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제도 도입

- 금융이용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 하고, 적합한 상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도우미 서비스** 제공
- ※ 위 내용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금융지원으로, 복지지원 과는 달리 상화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대상자에 한정

- 1 기존 "장애인 자립자금"→"취약계층 자립자금"으로 확대(공통)
- ◆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低利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여 자립기반 마련 지원

가. 도입 필요성

□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자금 수요 발생시 低利자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대출에 빠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현재 미소금융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低利 자립자금 지원 中)

나. 상품 주요내용

- □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❷「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❸「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기존 '장애인 자립자금'과 동일)
- □ (조건) 최대 12백만원, 금리 연 3.0%,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 □ (용도) 생활안정자금(생계자금)
- □ (취급기관)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
- □ (시행시기) '17.5.2일 시행 예정

다. 기대효과

□ 최대 100만명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2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공통)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

가. 도입 필요성

□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생활비중 주거비 비중이 높으며, 애로 사항 청취 결과, 모든 계층에서 교육자금 지원 필요성 제기

나. 상품 주요내용

주거비 지원

- □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85㎡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자
- □ (조건) 최대 2천만원, 금리 2.5%, 2년 이내 원금일시상환
- □ (용도) 주거 임차보증금

교육비 지원

- □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 (조건) 최대 5백만원,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 (용도) 교육비
- □ (취급기관 및 시행시기, 공통)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 / '17.5.2일부터 시행 예정

3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사항

◈ 공통지원사항 이외에도 각 지원대상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도모

1)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

가. 도입 필요성

□ 청소년 한부모가 원활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활 및** 학업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나. 주요내용

□ (대성)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주로서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연령기준

□ (지원방식) 청소년 한부모가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
 (금리 최대 4.0~6.2%) 만기 해지시, 진흥원이 최대 월 10만원까지
 연 금리 2.0% 추가 지급 ➡ 최대 연 8.2%의 이자 수취

□ (취급기관 및 시행시기)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 / '17.5.2일부터 시행 예정

다. 기대효과

□ 상품가입 가능 대상은 약 3천명* 내외의 청소년 한부모

* '15년 기준 24세 미만 미혼모(부)는 총 2,777명(모 2,279명, 부 498명)

2)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 지원

가. 도입 필요성

□ 자활의지 및 상환능력이 있어 자립자금을 지원받은 조부모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상품 주요내용

(대상)	조손:	가정(조부모	,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
가구주.	로서 '	취약계충	자립기	자금'	을 3개	월 ㅇ]상 성	실상환형	한 자

- □ (방식) 생계자금 상환기간 중 해당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지원(보험료 전액 지급, 최대 5년)
- □ (취급기관 및 시행시기)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 / '17.6월부터 시행 예정

3)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 등 피해지원

가. 지원 필요성

□ **언어 및 사회적응 문제** 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들은 이로 인해 금**융사기피해에** 취약

나, 지원 주요내용

- □ (대상) 다문화가족 가구주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연소득 2천 만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관련 피해**가 있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무인가 투자자문, 펀드 불완전판매 등
- (조건) 최대 5백만원, 연 금리 2.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존 '새희망힐링론'의 취약계층 특별 우대금리
- □ (용도)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활비 등 긴급생활안정 자금
- □ (취급기관 및 시행시기)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 회복위원회 지부) / '17.4월중 시행 예정

4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제도 도입(공통)

◈ 제도권 금융 이용경험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

가. 도입 필요성

□ 취약계층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필요

나. 주요내용

- □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와 동일
- □ (지원내용) 정책서민자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이용 안내 및 상담,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
- □ (신청방법)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 통합 콜센터를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상담" 신청
- □ (시행시기) '17.6월부터 시행 예정
-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우미 선정('17.4월) → 사회
 복지사, 금융회사 담당자 등을 통한 도우미 통합교육 실시('17.4~5월)

다. 기대효과

- □ 정부수급 등에 익숙한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능력을 기초로 한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 □ 사전교육을 통해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

Ⅳ. 향후계획

- ◆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 마무리
- ① "취약계층 자립자금": '17.5.2일 시행 예정
- ②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 '17.5.2일 시행 예정
- ③ 지원대상별 추가지원 사항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프로그램 : '17.5.2일 시행 예정
-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 실손보험 지원 : '17.6월 시행 예정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금융피해 지원 강화: '17.4월중 시행
- ④ "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 제도": 17.6월 시행 예정

〈 과제별 주요 추진일정 〉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① 취약계층 자립자금 확대	'17. 5.2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	진흥원			
② 취약계층 주거비/교육비 지원 강화	'17. 5.2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	진흥원			
③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프로그램	'17. 5.2	세부사항 협의 전산시스템 준비	진흥원 금융회사			
④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	'17.6월	세부사항 협의 전산시스템 준비	진흥원 금융회사			
⑤ 다문화가족등 금융피해지원 강화	′17.4월중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	신복위			
⑥ 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	'17.6월	도우미 선정·교육 등	진흥원			